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대 아동학대 사건 원인 분석,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전자감독 전담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남양주보호관찰지소 신설에 따른 운영 필요 인력 1명(5급 1명),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설에 따른 운영 필요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소년원 의료 인력 4명(간호7급 4명), 치료감호소 유희병동 운영을 위한 의료 인력 13명(간호6급 1명, 간호7급 2명, 간호8급 4명, 간호조무9급 5명, 의료기술8급 1명), 대체복무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력 30명(6급 6명, 7급 10명, 8급 14명),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필요 인력 1명(4·5급 1명), 가석방 심사 내실화를 위한 필요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에 따른 운영 필요 인력 2명(5급 2명), 경북북부 지역 체류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 보호외국인 관리 퇴거전담에 필요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신설에 따라 법무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서울지방교정청에 이체하면서 대체복무교육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

영하며,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확대를 위해 증원한 전자감독 전담인력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과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전담인력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평가 대상 정원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정청 부서장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보호관찰기관 및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관할구역을 일부조정하며, 보호관찰관 직급 및 보호관찰소 직제과를 일부 조정하고, 소년보호기관 리모델링 건축업무 및 치료감호소 정신재활 치료 등을 고려하여 직렬 교환, 전문경력관 전환 및 공업직군 이체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위치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7.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사회복지과 및 분류센터를 둔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분류센터를,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를 “대체복무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정관으로 보하고”를 “교정관으로”로,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 중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을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이수명령 집행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수용자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등에 관한 사항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기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학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급식,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프로그램,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 중 “서기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을 “서기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둔다.
- ③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는 위치추적과와 관제행정과를 두며,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위치추적과장은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관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

기에 관한 사항

제24조 중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무관”을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호주사”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홍성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를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 “집행과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관찰과”를 “집행과”로 한다.

별표 1의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의 위치란 중 “성동면”을 “성동면 우곡리”로 한다.

별표 3의 의정부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로 하고, 같은 표에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경 기 도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남 양 주 지 소	남 양 주 시	

별표 3의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의 관할구역란 중 “이천시·여주군·양평군”을 “이천시·여주시·양평군”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서명란 중 “집행”을 “집행과, 조사”로 한다.

별표 4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중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를 “과천시·성남시·하남시”로 하고, 같은 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중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을 “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로 하며, 같은 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경기도 광명시”를 “·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로 하고, 같은 표 명칭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란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하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안양시· 군포시·광명시
--------------	------------	-----------------------------

별표 4의2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	----------

별표 5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32”를 “727”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를 신설하고, 교정관 “22”를 “2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를 신설하고, 교감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1”을 “2”로 하고, 교위 “20”을 “19”로 하며,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하고, “교사 1”를 삭제하며, “식품위생서기 1”를 삭제하고, “공업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32”를 “727”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를 신설하고, 교정관 “22”를 “2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를 신설하고, 교감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1”을 “2”로 하고, 교위 “20”을 “19”로 하며,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하고, “교사 1”를 삭제하며, “식품위생서기 1”를 삭제하고, “공업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504”를 각각 “16,55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교정관 “33”을 “34”로 하며, 교정관 “325”를 “326”으로 하고, 교감 “1,437”을 “1,440”으로 하며, 간호주사 “27”을 “33”으로 하고, 교위 “1,807”을 “1,810”으로 하며, 간호주사보 “44”를 “54”로 한다.

별표 7 중 시설주사보 “21”을 “22”로 하고, 교사 “5,603”을 “5,606”으로 하며, 식품위생서기 “20”을 “21”로 하고, 간호서기 “59”를 “73”으로 하며, 교도 “6,090”을 “6,094”로 하고, 공업서기보 “77”을 “79”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43”을 각각 “456”으로 하고, 간호주사 “24”를 “25”로 하며, 방호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 1”를 신설하고, 간호주사보 “56”을 “58”로 하며, 간호서기 “58”을 “62”로 하고, 의료기술서기 “3”을 “4”로 하며, 공업서기보 “3”을 “2”로 하고, 간호조무서기보 “133”을 “138”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작업치료 담당) “1”을 “2”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특수치료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2”를 각각 “992”로 하고,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삭제하고, 보호주사 “107”을 “108”로 하며,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보호주사보 “192”를 “194”로 하며, 간호주사보 “15”를 “19”로 하고, 보호서기 “193”을 “194”로 하며, 보호서기보 “172”를 “174”로 하고, 공업서기보 “14”를 “15”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13”을 각각 “2,002”로 하고, 보호사무관 “184”를 “185”로 하며, 보호주사 “316”을 “333”으로 하고, 보호주사보 “434”를 “463”으로 하며, 보호서기 “443”을 “472”로 하고, 보호서기보 “400”을 “413”으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68”을 각각 “2,583”으로 하고, 서기관 “19”를 “2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7”을 “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01”을 “103”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33”을 “438”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보 “692”를 “695”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

“686”을 “689”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보 “509”를 “511”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68”을 각각 “2,583”으로 하고, 서기관 “19”를 “2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7”을 “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113”을 “115”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 “421”을 “42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보 “692”를 “695”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 “686”을 “689”로 하고, 출입국관리서기보 “509”를 “511”로 한다.

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	2024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
•	•	•
1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7)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별표 4 및 별표 4의2 중 “안산출입국·외국사무소”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21부터 각각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방교정청) ① (생 략)	제15조(지방교정청)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 과 및 사회복지과를 둔다.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 과 및 <u>분류센터</u> 를, 대전지방교 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는 분 류센터를 따로 둔다.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 과·사회복지과 및 <u>분류센터</u> 를 둔다.----- --- <u>대체복무교육센터</u> ----- ----- -----.
③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사회 복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 터장은 서기관 또는 <u>교정관</u> 으로 <u>보하고</u> ,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u>전 산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③----- ----- ----- <u>교정관</u> 으로- ----- ----- <u>전 산사무관</u> 으로 보하고, 대체복무 <u>교육센터장</u> 은 <u>교정관</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1. <u>수용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2. <u>수용자의 가석방 또는 가출</u>	<u><삭 제></u>

소 신청의 조정

13. · 14. (생 략)

⑥ 삭 제

⑦ 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신 설>

9. ~ 15. (생 략)

⑧ 삭 제

⑨ (생 략)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13. · 14. (현행과 같음)

⑦-----
-----.

1. ~ 7. (현행과 같음)

8. ----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이수명령 집행 등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9. ~ 15.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수용자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등에 관한 사항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기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②
(생략)

③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교무과장·분류심사과장·호송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⑨ (생략)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생략)

② 센터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

3. 교육생 학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생 급식,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프로그램,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기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는 위치추적과와 관제행정과를 두며,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위치추적과장은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관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
소·보호관찰지소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
무관으로 한다.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② (생략)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과, 관찰과 및 집행과
를,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
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대전
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
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
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
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찰
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관찰과 및 집행과
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4.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 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 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24조(보호관찰관) -----

----- 일반직공무
원·부이사관·서기관·보호사
무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
는 보호주사---.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천안지소·대구보
호관찰소 서부지소·부산보호
관찰소 동부지소·광주보호관
찰소 순천지소·부산보호관찰
소 서부지소 및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집행과-----

관찰과를 둔다.

④ ~ ⑧ (생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63	758	-5
일반직 계	732	727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신 설>	1	+1
교정관	22	21	-1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	•	•	
•	•	•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교감	<u>34</u>	<u>33</u>	-1
•	•	•	
•	•	•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u>1</u>	<u>2</u>	+1
•	•	•	
•	•	•	
교위	<u>20</u>	<u>19</u>	-1
•	•	•	
•	•	•	
<u>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교사</u>	<u>1</u>	<u><삭 제></u>	-1
•	•	•	
•	•	•	
<u>식품위생서기</u>	<u>1</u>	<u><삭 제></u>	-1
•	•	•	

• <u>공업서기보</u> • •	• <u>2</u> • •	• <u><삭 제></u> • •	-2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63	758	-5
일반직 계	732	727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신 설>	1	+1
교정관	22	21	-1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	•	•	
•	•	•	
<u>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교감	<u>34</u>	<u>33</u>	-1
•	•	•	
•	•	•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u>1</u>	<u>2</u>	+1
•	•	•	
•	•	•	
교위	<u>20</u>	<u>19</u>	-1
•	•	•	
•	•	•	
<u>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교사</u>	<u>1</u>	<u><삭 제></u>	-1
•	•	•	
•	•	•	
<u>식품위생서기</u>	<u>1</u>	<u><삭 제></u>	-1
•	•	•	

• <u>공업서기보</u> • •	• <u>2</u> • •	• <u><삭 제></u> • •	-2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504</u>	• <u>16,553</u>	+49
일반직 계	<u>16,504</u>	<u>16,553</u>	+49
•	•	•	
•	•	•	
서기관 또는 교정관	<u>33</u>	<u>34</u>	+1
•	•	•	
•	•	•	
교정관	<u>325</u>	<u>326</u>	+1
•	•	•	
•	•	•	
교감	<u>1,437</u>	<u>1,440</u>	+3
•	•	•	
•	•	•	
간호주사	<u>27</u>	<u>33</u>	+6
•	•	•	
•	•	•	
교위	<u>1,807</u>	<u>1,810</u>	+3
•	•	•	

·	·	·	
간호주사보	<u>44</u>	<u>54</u>	+10
시설주사보	<u>21</u>	<u>22</u>	+1
·	·	·	
·	·	·	
교사	<u>5,603</u>	<u>5,606</u>	+3
·	·	·	
·	·	·	
식품위생서기	<u>20</u>	<u>21</u>	+1
·	·	·	
간호서기	<u>59</u>	<u>73</u>	+14
·	·	·	
·	·	·	
교도	<u>6,090</u>	<u>6,094</u>	+4
공업서기보	<u>77</u>	<u>79</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43	456	+13
일반직 계	443	456	+13
간호주사	24	25	+1
공업주사	<신 설>	1	+1
간호주사보	56	58	+2
간호서기	58	62	+4
의료기술서기	3	4	+1
공업서기보	3	2	-1

•	•	•	
간호조무서기보	<u>133</u>	<u>138</u>	+5
•	•	•	
•	•	•	
전문경력관 나군	<u>1</u>	<u>2</u>	+1
(작업치료 담당)			
•	•	•	
•	•	•	
전문경력관 다군	<u>1</u>	<u><삭 제></u>	-1
(특수치료 담당)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82	992	+10
일반직 계	982	992	+10
·	·	·	
·	·	·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 제>	-1
보호주사	107	108	+1
·	·	·	
공업주사	2	1	-1
·	·	·	
·	·	·	
보호주사보	192	194	+2
·	·	·	
·	·	·	
간호주사보	15	19	+4

·	·	·	
보호서기	<u>193</u>	<u>194</u>	+1
·	·	·	
·	·	·	
보호서기보	<u>172</u>	<u>174</u>	+2
공업서기보	<u>14</u>	<u>15</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913</u>	<u>2,002</u>	+89
일반직 계	<u>1,913</u>	<u>2,002</u>	+89
·	·	·	
·	·	·	
보호사무관	<u>184</u>	<u>185</u>	+1
·	·	·	
보호주사	<u>316</u>	<u>333</u>	+17
·	·	·	
·	·	·	
보호주사보	<u>434</u>	<u>463</u>	+29
·	·	·	
보호서기	<u>443</u>	<u>472</u>	+29
·	·	·	
·	·	·	
보호서기보	<u>400</u>	<u>413</u>	+13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68	2,583	+15
일반직 계	2,568	2,583	+15
서기관	19	20	+1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7	6	-1
출입국관리사무관	101	103	+2
출입국관리주사	433	438	+5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695	+3

출입국관리서기	<u>686</u>	<u>689</u>	+3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09</u>	<u>511</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68	2,583	+15
일반직 계	2,568	2,583	+15
서기관	19	20	+1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7	6	-1
출입국관리사무관	113	115	+2
출입국관리주사	421	426	+5
출입국관리주사보	692	695	+3

출입국관리서기	<u>686</u>	<u>689</u>	+3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09</u>	<u>511</u>	+2
•	•	•	
•	•	•	